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19
----------	-------

발의연월일 : 2026. 5. 19.

발 의 자 : 양부남 · 정준호 · 김한규
김문수 · 윤준병 · 이정문
장종태 · 박정현 · 박균택
전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참전에 따른 희생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을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배우자 또한 양로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양로지원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

조 및 제8조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또는 그 배우자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또는 그 배우자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참전명예수당은”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참전유공자가”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로 한다.

③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배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

하는 달에 이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참전유공자가 65세 전에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생존하였을 경우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배우자가 제5조의2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로서”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람 또는 그 배우
자로서-----

3. (생략)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
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
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
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
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3. (현행과 같음)

②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
예수당은-----

③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
한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가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가 사
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
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배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
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
이 속하는 달에 이미 참전유
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
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2. 참전유공자가 65세 전에 사
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생
존하였을 경우 65세에 도달하
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배
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8호에 규
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
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8조(양로지원) ①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부
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없는

④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가-----
-----.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8조(양로지원) ① -----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서--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